

시 방 서

적용 제품 : 갓길봉

[본 시방서는 설치 시공 방법의 개선을 통해 사전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정 이력

개정날짜	개정사유	개정번호
2016.01.01	전면개정	시방서_갓길봉_1

신도산업(주)

갓길봉 설치 시방서

1. 일반 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갓길봉으로 시공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실시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갓길봉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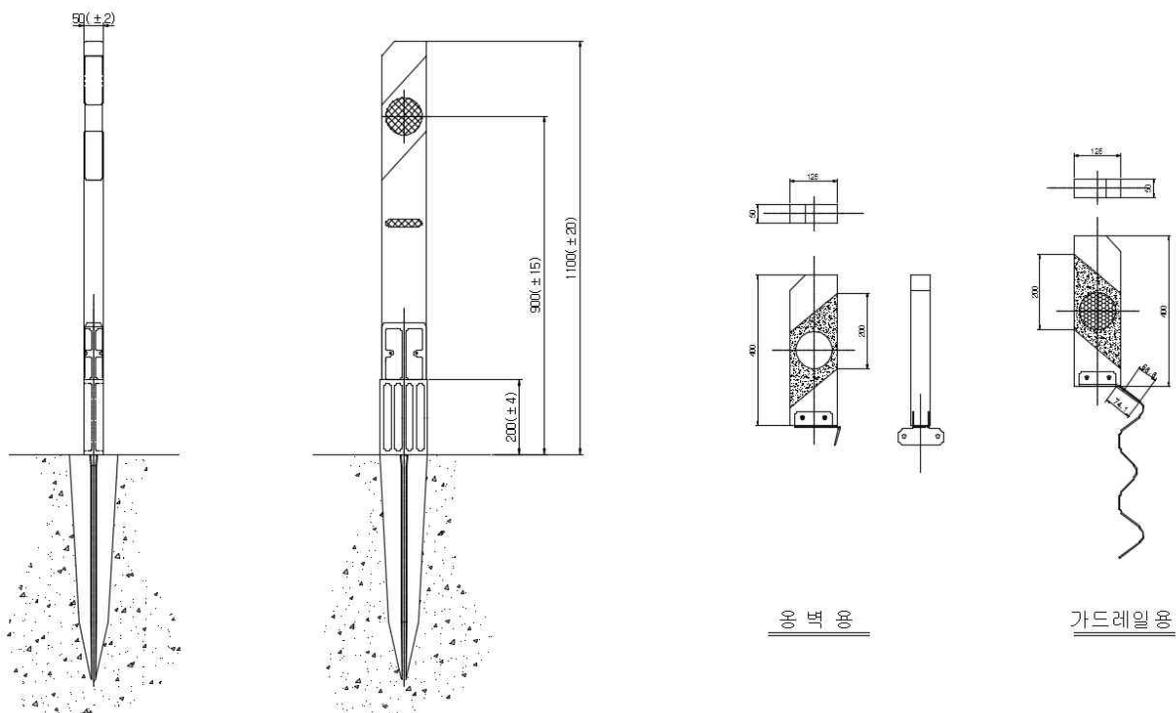
2. 제품의 명칭 및 규격

가. 명칭 : 갓길봉

나. 규격 : 125mm X 50mm X 1100mm(토공용)
125mm X 50mm X 400mm (옹벽용/가드레일용)

다. 재질 : PE

3. 제품 구조도.



4. 설치관리.

4.1 일반사항

- 가. 현장 감독자와 현장을 답사, 정확한 시설물 위치를 선정하며, 시공시 문제가 발생될 요소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 나. 설치 현장의 시공 전, 중, 후 사진을 찍어 사후 관리한다.
- 다. 현장에 특이사항 있을 경우 별도의 “특별 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 할 수 있다.

4.2 안전조치

- 가.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 나. 일반 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3 시공방법

4.3.1 공통사항

- 가. 갓길봉의 설치 위치를 확인한다.(곡선구간 및 직선구간 고려)
 - ※설치 위치 지하의 배관, 배선 유무를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확인할 것.
- 나. 설치 위치를 표시한다.
- 다. 용도별 시공 순서대로 설치한다.
- 라. 시공이 종료되면 주변 정리를 하고 안전 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

4.3.2 토공용

- 가. 설치 위치를 표시한다.
- 나. 표시 위치에 차단기(쁘레카)로 핀 좌우를 타격하여 60cm 매립한다.
(굴삭기를 이용 할 경우 지하에 매립물이 있는지 주의하며 60cm깊이로 터파기를 한 다음 매립한다).
- 다. 매립 후 조장이 시작점부터 일정 거리 후방에 위치하여 전.후.좌.우가 수직이 맞고 일직선이 되었는지 확인한다.(지면으로부터 반사지 중심과의 거리는 90cm 되도록 한다)
 - ※확인사항 : 투시 각도/반사지색상/인쇄 방향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 라. 확인 결과 불량한 경우 신호를 보내어 수정토록 한다.
- 바. 수정이 끝난 후 갓길봉을 완전하게 고정한다.

4.3.3 옹벽용

- 가. 설치 위치에 브라켓을 대고 천공 포인트를 마킹한다.
(설치 후 지면과 반사지 중심과의 거리는 90cm가 되도록 한다)
- 나. Ø 12드릴로 깊이 60mm가량 천공한다.
- 다. 5/16인치 셋트 양카를 천공된 구멍에 넣고 펀칭하고 옹벽용 갓길봉을 가조립한다.
- 라. 인팩트 렌치에 13mm복스를 끼워 완조립 한다.

마. 조립 후 조장이 시작점부터 일정 거리 후방에 위치하여 전.후.좌.우가 수직이 맞고 일직선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투시 각도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사. 확인 결과 불량한 경우 신호를 보내어 수정토록 한다.

4.3.3 가드레일용

가. 설치 위치의 가드레일 볼트를 풀어준다.

나. 갓길봉 브라켓을 가드레일 안쪽에 넣고 가드레일 볼트를 조립한다.

다. 조립 후 조장이 시작점부터 일정 거리 후방에 위치하여 전.후.좌.우가 수직이 맞고 일직선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투시 각도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라. 확인 결과 불량한 경우 신호를 보내어 수정토록 한다.

5. 검사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6. 유지관리

본 갓길봉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유지는 2014년 국토교통부 “도로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원칙으로 한다. 지침서에 없을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6.1 점검

점검은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의 이상여부를 점검한다.

6.2 보수

가. 사고 또는 자연 재해에 의한 파손 또는 변형으로 인한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복구한다.

7. 기타

7.1 기록

파손 또는 변형된 경우에는 면밀히 조사하여 기록 하여 개선에 반영토록 한다.

- 1) 점검 보수시의 기록은 건교부 지침에 따른다.
- 2) 시공상 특이점등 기록

7.2 설치관련 협조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